

December 23, 2016

2017년 개정세법 – 법인과세 관련 주요내용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 변경,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2016. 12. 20.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법인과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개정된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27조의2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 + ②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 : (① + ②)×50% ① 1천200만원(중소기업 2천400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근로자수가 일정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 초과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 매년 800만원까지 인정, 초과액은 이월	■ 특정법인에 대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 800만원 → 400만원 • 800만원 → 400만원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엔젤투자자와 같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되어 민간자금의 유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출자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신설〉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세액공제 - 출자방법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 특수관계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출자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 출자방법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 사후관리 - 출자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추징 - 적용시기 - 2017. 1. 1.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19. 12. 31.

3.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한 강화

개정된 법인세법(제58조의3, 제66조, 제72조의2)에서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이하 “분식회계”라 함)에 대한 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위 개정규정은 2017. 1. 1.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에 있던 중소기업 가속상각 특례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28조의(신설)로 이관하는 한편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 취득기간 - 2014. 10. 1.~ 2016. 6. 30. • 요건 - 전년 대비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조특법으로 이관 • 취득기간 - 2016. 7. 1.~ 2017. 6. 30. • 요건 - (좌동) • 내용연수 - (좌동) • 중견기업에도 적용*(신고조정 허용) * 취득기간 : 2016. 1. 1.~2017. 6. 30. • 적용시기 - 2017. 1. 1.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기업구조조정지원

개정 조특법에서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개 정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조특법제121조의32)	• 과세이연요건 - 1년 이상 사업영위 법인간 합병 - 합병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 계속 - 합병대가 중 주식 70%이상 배정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18. 12. 31.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4조의3)	• 대상 : 자본확충목적회사* *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 과세특례 -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손실보전준비금을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 적립한도는 이익의 100%* *한도 : 매입증권 잔액의 10% - 손실보전준비금 잔액 • 준비금 관리 - 손실 발생시 준비금과 상계(잔액은 5년 후 일시 익금산입) • 적용시기 : 2017.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21. 12. 31.
재무구조개선·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비용인정 특례신설 (조특법 제44조,제121조의29)	•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채권가액-주식시가)을 출자전환 시점에 비용인정 • 적용시기 : 2017. 1. 1.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톤세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은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운기업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행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 적용	■ 특례적용 포기를 한시적으로 허용 • (좌동) • 특례 적용 포기 허용 • 적용시기 - 2017. 1. 1.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적용기한 - 2017.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 허용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진 파트너변호사	TEL. 02 316 4246	E-Mail. hjikim@shinkim.com
● 노형철 세무사	TEL. 02 316 4483	E-Mail. hcrho@shinkim.com
● 정인화 선임공인회계사	TEL. 02 316 4219	E-Mail. ihchung@shinkim.com
● 이정진 전문위원	TEL. 02 316 4417	E-Mail. jjlee@shinkim.com